

[별표 1]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개요 및 평가항목

1. 개요 : 일자리를 창출하고,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, '중소기업 일자리평가*' 도입

* (구)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('19년부터 명칭 변경)

2. 절차 : 중소기업이 사업신청 시, 인터넷 상에서 '일자리평가표'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DB를 활용하여 확인·검증 후 평가점수 반영

3. 평가항목

구분	평가분야	평가항목	배점한도	비고								
합계			-20~100									
I. 일자리 양	1. 고용증가	가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나.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	70	가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)과 나 항목(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)을 각각 평가한 후 더 높은 평점을 반영			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<td>상위 10%</td><td>+70</td></tr> <tr><td>상위 20%</td><td>+60</td></tr> <tr><td>상위 30%</td><td>+50</td></tr> <tr><td>상위 40%</td><td>+40</td></tr> <tr><td>고용유지</td><td>+30</td></tr> <tr><td>고용감소</td><td>+20</td></tr> </table>			상위 10%	+70	상위 20%	+60	상위 30%	+50	상위 40%	+40
상위 10%	+70											
상위 20%	+60											
상위 30%	+50											
상위 40%	+40											
고용유지	+30											
고용감소	+20											
II. 일자리 질	1. 성과공유	가. 미래성과공유 협약 (+10)	10	별표3								
		나. 내일채움공제 (+5) 다. 청년내일채움공제 (+5) 라. 우리사주제도 운영 (+5) 마. 스톡옵션 운영 (+5)	1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								
	2. 근로환경	가. 정규직 전환 (+10) 나. 일자리 함께하기 (+10) 다. 가족친화인증 (+5) 라. 청년친화강소기업 (+5) 마. 노사문화우수기업 (+5) 바. 인재육성형중소기업 (+5) 사.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(+5) 아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(+5)	10	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평점 합산 반영								
III. 고용질서 준수	1. 법령 준수	가. 고액·상습 임금체불 (-10) 나.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(-10)	-20									

[별표 2]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평가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

평가항목	내용 및 문의처
미래성과공유 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▪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내일채움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합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▪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-7900, https://www.sbcplan.or.kr/
청년내일채움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청년/기업/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(+이자)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▪ (문의처) 관할 고용복지+ 센터 (1350), 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
우리사주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'전체'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, 보유하게 하는 제도 ▪ (문의처)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, https://esop.ksfc.co.kr
스톡옵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▪ (문의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정규직 전환 (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·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▪ (문의처)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+ 센터 (1350), 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
일자리 함께하기 (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 기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교대제 개편, 실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▪ (문의처) 고용부 고용복지+ 센터 (1350), http://www.work.go.kr/jobcenter
가족친화인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한국건강가정진흥원(02-6309-9048), http://www.ffsb.kr
청년친화강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중소기업중앙회 (02-2124-3305), http://www.work.go.kr/smallGiants
노사문화우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노사발전재단 (02-6021-1055), https://www.nosa.or.kr
인재육성형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: 중소기업진흥공단 (055-751-9825), https://sanhakin.mss.go.kr
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개요)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한국산업인력공단 (052-714-8216), http://www.hrdkorea.or.kr
안전보건경영시스템 (KOSHA 1800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 인증을 받은 기업 ▪ (문의처) 안전보건공단 (052-7030-593), http://www.kosha.or.kr

[별표 3]

미래성과공유 협약방법 (미래성과공유기업 확인방법)

□ 미래성과공유기업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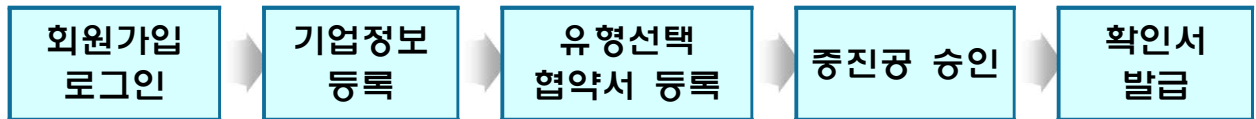
→ 사업주와 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(①~⑥ 성과공유 유형중 한 개 이상)를 미래에 도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

< 성과공유 7가지 유형 >

- ① 경영성과급 ② 성과보상기금(내일채움공제, 청년공제) ③ 임금상승률
- ④ 우리사주제 운영 ⑤ 사내(공동)근로복지기금 ⑥ 주식매수선택권

□ **신청사이트** :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(<https://sanhakin.mss.go.kr>)

□ 온라인 협약신청 절차



- ① 기업회원가입 미 로그인
- ② [신청관리 - 미래성과공유기업 신청] 클릭
- ③ [기업정보 등록] 탭 : 기업의 기본정보 입력
- ④ [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] 성과공유 유형중 1개 이상 선택, 출력
- ⑤ [서명 협약서 등록]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
- ⑤ 중진공(메인비즈) 승인 → (1~2일내 승인)
- ⑥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, 출력

□ 확인서의 유효기간

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최초1회만 인정, 유효기간(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) 내 성과공유 실적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여 확인받으면 성과공유 도입기업 전환

□ **[문의처]** 메인비즈협회 ☎ 02-2230-2120

중소기업진흥공단 : ☎ 055-751-9829(9825)

※ '성과공유기업' 확인서 발급기업에 혜택적용

구분	지원혜택
금융	중진공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· 창업기업지원자금(일자리창출촉진-인재육성 부문) *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 기업만 해당
가점	· 중소기업지원사업(R&D, 수출 등 44개) 평가 시 '고용영향 평가' 항목에 점수 반영(20점 → 30점 상향예정) ·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평가 시 점수 반영 ·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점수 반영
홍보	· 존경받는기업(26개), 인재육성형중소기업(누적 855개) 등 성과공유 도입 우수기업을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홍보 · 성과공유 모범기업 우수사례집 수록
세제 (예정)	· (기업 세제지원)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*의 10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· (근로자 세제지원) 중기 근로자가 경영성과급 수령 시 발생하는 근로소득세 증가분의 50% 세액 공제 ** 조특법 19조 개정완료, 시행령 개정 중으로 지원 미확정

[성과급 유형의 세제지원 관련 법률]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

제19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성과공유 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(이하 이 조에서 "경영성과급"이라 한다)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
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2.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,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24.]

제8조(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발급번호 : 제2018-000013호

성과공유기업 확인서

사업자번호(법인번호) 111-11-11126(111111-1111126)

기업명 test16

대표자명 대표16

유효기간 2018년 12월 13일 ~ 2019년 12월 12일

위 기업은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‘성과공유기업’임을 확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성과 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< 성과공유 유형 >

성과공유 유형	성과공유도입기업	미래성과공유기업
① 성과급 지급		<input type="radio"/>
②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		<input type="radio"/>
③ 임금수준의 상승		
④ 우회사주제도 운영		
⑤ 사내(공동)근로복지기금 운영		
⑥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부여		<input type="radio"/>
⑦ 기타유형 *		

* ⑦ 기타유형: 인재육성중소기업,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,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노사문화우수기업, 청년친화강소기업

2018년 12월 1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

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부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